

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(행정문화국 소관)

2020. 6. 18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996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5. 29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20. 5. 29(금)

2. 제안이유

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천구 협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고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금천구 협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(안 제7조제2항)

- 나.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자 함(안 제9조제4항)
- 다.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기관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 : 2020. 4. 20. ~ 2020. 5. 11.(의견없음)
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 : 원안동의
- 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6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천구 협치회의 운영을 효율적

으로 하고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
2020. 5. 29. 금천구청장이 발의하였음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금천구 협치
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(안 제7조제2항)

-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하여
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자 함(안
제9조제4항)

- 주민 및 직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민관협치 업무의
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5조)

: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 및
개인에게 구청장이 표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
구민들이 표창을 받는 근거를 알기 쉽게 명시하려는 것임.

○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,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는 데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
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,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

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마을자치과 금천1번가팀 박은혜
연 락 처	02-2627-2205

【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】

[시행 2016. 3. 1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49호, 2016. 3. 11., 일부개정]

서울특별시 금천구(행정지원과), 02-2627-101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표창대상)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획득한 공무원,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(기업체를 포함한다) · 그 소속원에게 수여한다. [개정 2005. 02. 16.]>

【양성평등기본법】

[시행 2019. 12. 19] [법률 제15985호, 2018. 12. 18, 일부개정]

여성가족부(여성정책과) 02-2100-6148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

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.>

1. 직종·직급·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
2.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
3.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
4.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
5.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

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